



## 인천지방법원

### 판 결

사 건 2025고정2157 저작권법위반  
피 고 인 A  
검 사 김희연(기소), 이재강(공판)  
판 결 선 고 2026. 5. 7.

### 주 문

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## 이 유

#### 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'B'에서 'C'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, 피해자 (주)D은 'E' 브랜드를 통해 화장품 등을 제조·판매하는 업체로서 'F'(등록 번호:G)에 대한 저작권자이다.

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
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일시경 인천 강화군 H 상가건물 1층 위 'C'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'F'(등록번호:G)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사전 허락 없이 'I'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위 'B' 사이트의 물품 판매 게시판에 마음대로 복제 및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.

### 증거의 요지

#### 1.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

##### 1. 고소장

1. 저작권 등록증, 고소인의 원저작물, 이 사건 복제물, 원저작물과 복제물 비교화면

[판시 증거에 의하면,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 및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.]

### 법령의 적용

#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

#### 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#### 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판사 김기호 \_\_\_\_\_